



세무조사

가이드북

(B유형)

“세무조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Happy Tax! Happy Together!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모든 국민들이 기분 좋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운영을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를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 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청장

목차

납세자권리헌장	3
세무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6
세무조사 진행과정별 확인할 사항	7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세무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9
세무조사의 마무리 (세무조사의 마지막까지 배려하겠습니다)	19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납세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
기타 안내말씀	29

세무조사 가이드북

세무조사 가이드북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지침서입니다.



세무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무조사 시작 · 진행



- 「세무조사 통지」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합니다.
- 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합니다.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장 면담 제도와 납세자 소명서 제출을 통해 의문·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종료



- 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일시적 자금압박을 겪고 있다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및 평가



-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객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 조사공무원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서 전화번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번호 :

세무조사 진행과정별 확인할 사항

주요 진행절차

확인 할 사항

세무조사 시작전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통지서, 납세자권리현장, 조사공무원 신분확인(조사원증, 공무원증)

세무조사 시작 · 진행



세무조사 시작

조사공무원 신분 확인(조사원증, 공무원증), 청렴서약서 작성, 세무대리인 위임장 제출 등

장부 · 서류 등 일시보관

명백한 탈루혐의 자료 등 실시 사유, 납세자의 동의 필요, 납세자 요청 시 14일 이내에 반환, 조사범위 외 일시보관 금지

자료제출 · 해명요구

조사범위 외 요구 및 조사 금지(단, 범위확대 통지 시 가능), 조사 과장 면담, 소명서 제출 등을 통해 충분한 해명기회 부여

조사기간 연장 · 범위확대 · 중지

통지서(통지 없이 임의로 기간연장 · 범위확대 등 금지), 통지내용(기간연장, 범위확대, 조사중지 사유 확인)

홈택스에서 조사진행상황 조회

납세자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사진행상황(조사 통지, 착수, 기간연장, 범위확대, 중지, 결과통지 등)을 조회

납세자 권리보호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선정 및 조사공무원의 행위가 있는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

중간설명

조사 진행내용, 향후 조사방향, 과세쟁점에 대한 조사팀의 검토 결과 등

세무조사 종료



세무 컨설팅의 날

조사결과(과세항목, 과세근거, 소득처분내용, 사후 회계처리방법 등, 조사결과에 대해 수정신고 가능), 불복청구 방법 등

세무조사 결과통지

조사내용, 결정 · 경정할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 및 사유 등(조사 결과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복청구 가능)

납세자의 평가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 회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납세자의견 청취(유선 또는 현장방문)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세무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대상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합니다.

세무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조사대상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합니다

조사대상자는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정기선정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 성실도 분석은 전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신고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비정기선정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익은 최대한 보호하고 불편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첫날 해야 할 5 가지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조사공무원은 조사착수시 조사원증과 공무원증을 제시하니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수령하십시오.

「세무조사 통지」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 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설명을 들으십시오.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를 낭독하여 납세자권리를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청렴서약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공정하고 깨끗한 세무조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서류 등에 대한 일시보관 요청에 협조하여 주십시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공무원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으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관련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이 경우 세무대리인이 귀하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입회 및 의견진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부, 증명서류 등은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하며,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합니다.

▶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에 의해 실시합니다.

-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은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목적과 관련 없는 질문 ·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장부 · 증명서류 · 물건」 등의 「제출 · 열람 · 해명」 요구는 문서에 의하도록 하여 과도한 자료 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 · 보관하도록 하여 동일한 자료를 중복해서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령에 의해 작성 · 보관 의무가 있는 회계장부 및 관련 증명서류(전산자료 포함)는 구두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는 조사공무원의 적법한 질문, 조사,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
- 조사공무원의 질문, 조사 또는 장부 ·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8조)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장부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조사공무원이 일시보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이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및 「장부·서류 등 반환 요청서」를 교부해 드립니다.

▶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조사목적에 지장이 없으면 즉시 반환하고 있으며, 조사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도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고 있습니다.(다만, 14일 이후에도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일시 보관중인 장부·서류 등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부·서류 등 반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 - 정보공개(우측상단) - 사전 정보 공표 -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 - 세금가이드 - 세무조사 가이드북 - 전체서식 다운받기)

- 일시보관한 장부·서류 등은 세무조사를 종결 할때까지 모두 반환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제공하고 납세자 의견을 경청합니다.

▶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부여합니다.

- 과세상 쟁점에 대해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견해가 타당한 부분은 과세 처분에 반영되도록 과장이나 팀장에게 서면으로 「납세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통해 조사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의문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을 원하시면 조사팀장에게 구두로 신청하거나 조사과장의 이메일 또는 사무실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

☎

)

거래사실의 입증을 위해서는 진실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 자금의 입·출금 거래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송금 또는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투명하게 해야 조사시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이 용이합니다.

▶ 납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금액기준 : '07년 5만원 초과, '08년부터 3만원 초과 거래는 모두 적용 (단, 접대비는 '09년부터 1만원 초과 거래 적용)

정규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단, 2013. 2. 15. 이후 최초 수취분부터 현금영수증,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는 증명서류보관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Q. 조사공무원의 장부 등 일시보관 요청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른 일시보관 절차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한 임의조사 절차이므로 납세자의 판단을 우선시 합니다. 다만, 조세범칙혐의가 있는 납세자가 일시보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공무원은 일반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세무조사는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합니다.

조사범위(세목, 과세기간)는 「세무조사 통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 다만, 조사진행 도중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조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조사범위의 확대는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 ▶ 조사범위의 확대는 외부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 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조사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사범위 등을 「조사범위 확대 통지」에 의하여 문서로 통보해 드립니다.



조사범위 확대 사유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조사기간 만료 전이라도 **성실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세무조사 통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 외국과의 정보교환, 과세사실판단자문 등으로 인해 일부분의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조사가 완료된 부분은 먼저 조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일과시간에 진행하게 됩니다.
 - 다만, 납세자가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과시간 이외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 연장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 ▶ 조사기간 연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 보호(담당)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조사기간 연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에 의하여 문서로 통보해 드립니다.
- ▶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조사기피, 금융거래 현지확인 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조사기간 연장 사유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등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질병, 사업상 심한 어려움 등 조사 중지사유(아래의 1~4)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가 중지되는 경우 「세무조사 중지 통지」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중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세무조사 중지 사유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때
2. 화재 및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6.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해외로 출국한 경우
7.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8.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등
9.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조사중지 기간이 경과하거나 중지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중지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잔여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 통지」에 의하여 조사재개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 시행

▶ 조사공무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로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③)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없는 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4.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사유없이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하는 행위
* 중소규모 :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최대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미만
5. 조사목적과 관련없는 장부·서류 등을 일시보관하거나, 납세자의 장부·서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부·서류 등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대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입회제도 시행

▶ 연간 수입금액 요건 등을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 현장에 입회하여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도움을 드립니다.

- (법인) 3억원, (개인)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보건·서비스업 15억원 미만
- ※ 자세한 신청 요건 등은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국번없이 126 → ③)로 문의바랍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령, 훈령, 질의회신, 대법원 판례,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사례 등 각종 세무정보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인터넷) : <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홈택스 「세무조사 진행상황 조회」 시스템 시행

▶ 조사 착수, 기간 연장, 조사 종결 등 조사 진행상황을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My NTS - 세무조사 이력



세무조사의 마무리

세무조사의 마지막까지 배려하겠습니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징수유예를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립니다.
(일시적인 자금압박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세무조사 마지막 날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무·회계와 관련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 컨설팅의 날」을 개최합니다.

▶ 조사종료일을 「세무 컨설팅의 날」로 정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무·회계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과세항목, 과세근거, 사후 회계 처리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불복제도 및 납부 안내 등 세무조사 후속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조사와 관련이 없더라도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담을 요청하면 조사공무원이 성실히 답변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 세목별 결정(경정)과세표준, 예상 고지세액, 사후관리할 사항 등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세금 ! 고귀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보내드립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고지 세액이 변경되거나 납세고지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우체국) 또는 인터넷 뱅킹 · ARS · ATM을 통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 (www.giro.or.kr)를 통하여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국세납부 사이트(www.cardrotax.kr) 또는 세무서 수납창구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여도 됩니다.

※ 신용카드 납부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며, 납부세액에 일정비율의 수수료(*18.5.1. 현재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징수유예를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립니다

일시적인 자금압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후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립니다.

일시적인 자금압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통해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징수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자금경색, 노동쟁의 등)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또는 체납된 국세의 독촉(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 납세담보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이 7천만원
(생산적 중소기업 ·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 사회적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 재기 중소기업인 ·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 스타트업 기업, 혁신중소기업은 1억원,
모범납세자는 5억원, 관세청장이 선정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2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는
2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 · 광업 ·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장기계속사업자 : 동일 사업자번호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 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

일자리창출중소기업 : 납세유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평균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 대비 2%(최소1명)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및 훈 · 포장수상자는 표창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수상자는 2년간 면제

-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이용 대상은 개인 및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개인은 1점, 법인은
100점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여 납세담보 면제를 신청한 경우 적립된 포인트당 10만원에 상당
하는 금액(연간 5억원 한도)에 대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 납세담보 제공 면제 금액 = Min(적립된 포인트×10만원, 연간 5억원)

03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납세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 사후 권리구제 제도



납세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사후 권리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내용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사후 권리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81조)

▶ 이의신청

- 고지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또는 관할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내용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 심사·심판청구

-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국무총리실 소속)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고지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지서를 받거나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내용은 접수 후 90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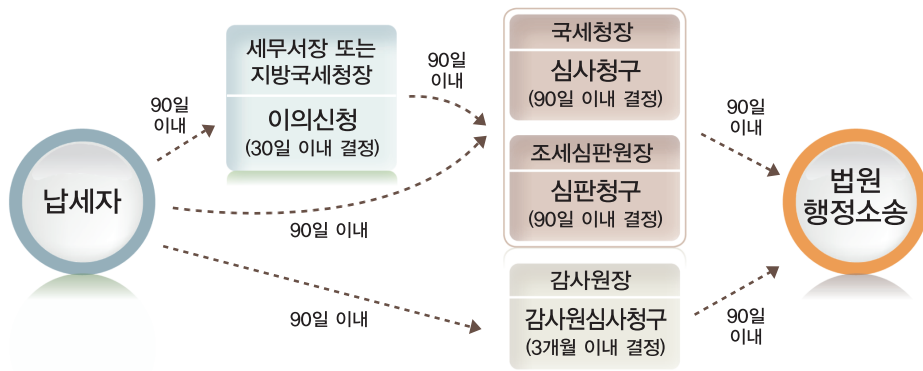
- 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내용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 행정소송

-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조사관서에 요청하면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 불복 절차도 |



고객인 납세자로부터 평가를 받겠습니다

납세자의 목소리는
국세행정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세무조사가 끝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전화를 통해 세무조사 협조에 따른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세무조사 과정상의 불편·불만 사항 등을 경청합니다.
-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확인 모니터링」 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께서 제기하신 소중한 의견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 모든 조사공무원들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청렴성에 대해 납세자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납세자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방법은 「고객 평가 체크리스트」(오른쪽 페이지 서식)를 작성하시어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체크리스트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에서 절취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우편(회신용 우편봉투 사용)이나 FAX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조사관서 : 지방국세청 · 세무서
 조사공무원(조사팀장) 성명 :
 조사개시일 : 년 월 일

* 익명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조사공무원 성명과 조사개시일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설문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정도를 점수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1 귀하는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점)						
1-2 조사공무원은 사전통지된 조사범위, 조사기간과 적법한 조사절차를 준수하였다. (점)						
1-3 조사공무원은 조사진행 절차와 진행과정에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점)						
1-4 조사공무원은 조사적출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적절한 해명기회를 제공하였다. (점)						
1-5 조사종료 후 과세내용(과세항목, 과세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점)						
1-6 조사종료 후 후속절차와 불복청구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점)						
2-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점)						
2-2 조사공무원의 자료요구가 무리함이 없었고 해명에 필요한 최소한에 국한하였다. (점)						
2-3 조사 중 조사공무원의 태도가 친절하였다. (점)						
2-4 조사공무원은 쟁점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다. (점)						
3-1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및 조사 종료 후 사적인 만남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점)						
3-2 조사공무원들은 청렴하다고 생각한다. (점)						
4-1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조사 진행 ③ 조사과정에서의 업무처리 지연 ⑤ 조사공무원의 불친절 ⑦ 조사업무를 상담할 직원의 부족 ⑨ 세무조사 가이드북의 내용 미흡 ⑪ 기타 () ⑫ 해당 없음 ② 조사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④ 조사결과 통보의 지연 ⑥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⑧ 조사 중 직원 교체시 인계인수의 미흡 ⑩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관리 부실						
4-2 조사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현행 부패방지 제도 및 시스템 ③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⑤ 세무대리인 등의 부패행위 조장 ⑦ 기관 전체의 청렴실천 의지 ⑨ 기타 () ⑩ 해당 없음 ② 직원 개개인의 청렴실천 의지 ④ 부패행위에 관대한 조직문화 ⑥ 부패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⑧ 고위직의 부패근절을 위한 실천의지						

| 각종 신청서 등 서식 |

다음의 각종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초기화면 - 정보공개(우측상단) - 사전 정보 공표 -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 - 세금가이드 - 세무조사 가이드북 - 전체서식 다운받기)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서 식 명	비고
1	세무대리인 위임장	
2	장부·서류 등 반환 요청서	
3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서	
4	조기결정신청서	
5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서	
6	국세·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9	이의신청서	
10	심사청구서	
11	심판청구서	
12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13	권리보호심의 요청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상담창구 및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문의사항	기관부서명	상담창구 또는 홈페이지
종 합 안 내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법 령 안 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세금 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종 합 상 담	국세청 126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126** 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기타 안내말씀

- 국세청은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영활동이나 기업이미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귀하(귀사)께서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사적인 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재차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귀하(귀사)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공무원에게 사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조사공무원이 사적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조사과장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거나 지방청 감사관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부담완화와 조사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반드시 협조 바랍니다.

◆ 조사사무실 설치 간소화

- ▶ 별도 휴게공간, 응접용 소파, TV, 냉장고(정수기 제외) 등 설치 금지

◆ 간식·사무용품 등 제공 금지

- ▶ 간식, 차·음료, 슬리퍼, 치약·칫솔, 화장품 등 제공 금지
- ▶ 필기도구, 메모지, 계산기, 세법전 등 사무용품 제공 금지

◆ 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편의제공 금지

- ▶ 회사 구내식당 식권 무료 또는 할인 제공, 공장 등 방문 시 회사 차량 제공, 유료주차장을 조사팀 출·퇴근용으로 무료 제공 등 금지

◆ 조사공무원과의 식사 등 금지



www.nts.go.kr